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8.29.>

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 명령서

제 2023-8 호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시설</td><td colspan="6">시설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소재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소유자
(관리자)</td><td colspan="3">성명</td><td colspan="3">생년월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주소</td><td colspan="3"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명령의 내용</td><td colspan="3">명령의 구분
소독</td><td colspan="3">명령의 이유
HPAI 발생 및 확산 방지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이행장소
거점소독시설</td><td>이행기간
2023. 01. 19. ~
2023. 01. 31.</td><td colspan="2">대상 두수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명령대상</td><td rowspan="2">가축</td><td>축종</td><td>품종</td><td>성별</td><td>연령</td><td>귀표(개체)
번호</td><td>특징</td><td>비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람</td><td colspan="7">양돈 관련시설(농장, 공장 등 포함) 방문자</td></tr>
<tr><td>차량</td><td colspan="7">양돈 관련시설(농장, 공장 등 포함) 방문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>준수사항</td><td colspan="7">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
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양돈농장 및 양돈 관련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기 전,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, 보관
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, 양돈농장의 소유자 · 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필히 제출</td></tr>
</table>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를 명합니다.

2023년 1월 19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유의사항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른 격리 · 억류 · 이동제한 · 소독 · 교통차단 · 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